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 1 절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들과 관련하여, 제 10.9 조제 1 항에 따라 캐나다가 취하는 유보
 - 1)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 2) 제 10.3 조 (최혜국 대우)
 - 3) 제 10.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 10.5 조 (국경간 무역), 또는
 - 5) 제 10.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 2 절에서는,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 10.5 조(국경간 무역) 또는 제 10.8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캐나다가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캐나다가 취하는 유보
2. 제 1 절의 각 유보는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 1 항나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을 나타낸다.

6. 캐나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 10.5 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유보는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로 작용한다.

두주

1. 이 유보목록에 열거된 하위 분야에서,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의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제 1 절 또는 제 2 절에 유보사항으로 조치가 열거되는 것은 제 10.10 조(예외)에 따라 신중함을 이유로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로서 달리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 캐나다는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10.9 조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 10.9 조제 1 항다호는 제 10.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고, 제 10.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II
캐나다의 유보목록

제1절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전체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조치	은행법 s.s. 159(2) 보험회사법 s.s. 167(2) 신탁 및 대부회사법 s.s. 163(2) 신용협동조합법 s.s. 169(2)
유보내용	금융기관 이사들의 단순 과반수는 캐나다인 거주자일 것이 요구된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전체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최혜국 대우(제 10.3 조) 국경간 무역(제 10.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8 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	
유보내용	모든 주 및 준주의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제2절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전체
유보유형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유보내용	캐나다는 GATS상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16/Suppl.4/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 16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전체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서 삭제:

7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은 기준액에 도달한 후 5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퍼센트가 널리 보유되고, 캐나다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상장할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 추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은 기준액에 도달한 후 3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퍼센트가 널리 보유되고, 캐나다의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상장할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공급형태 3(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에서 삭제: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캐나다 은행법」 별표 I 은행의 어떠한 종류의 주식도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 추가: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장관 승인 없이 연방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어떠한 종류의 주식도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어떠한 종류든 20 퍼센트, 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어떠한 종류든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유보내용	<p>캐나다는 15 만 캐나다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캐나다는 시중은행지점과 대출은행지점이 캐나다 예금보험공사의 회원기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유보내용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지점을 설립하도록 승인된 외국 은행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또한 외국대출지점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10.3 조)
정부수준	연방 및 지역
유보내용	캐나다는 국경 간 증권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